

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최민규 의원 대표 발의)

의안 번호	823
----------	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3년 05월 30일

발 의 자: 최민규, 강석주, 경기문, 고광민, 곽향기, 구미경, 김규남, 김길영, 김동욱, 김영옥, 김영철, 김용호, 김재진, 김종길, 김지향, 김태수, 김형재, 김혜영, 남창진, 문성호, 박상혁, 박 석, 박춘선, 서상열, 송경택, 신복자, 유만희, 윤기섭, 윤영희, 이경숙, 이병윤, 이봉준, 이상욱, 이숙자, 이종배, 임춘대, 장태용, 정지웅, 최호정, 홍국표, 황철규 의원(41명)

1. 제안이유

- 사회성과보상사업 심의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효율적·탄력적으로 운영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비상설 위원회는 위원회 구성시마다 상정안건 분야 위원으로 위원 변경(위촉)이 가능하므로, 안건 분야 특별위원 추가 위촉 규정을 삭제함(안 제13조제1항).
- 나. 위원 임기 규정을 삭제하고, 심의·의결 후 위원회를 자동 해산하도록 규정함(안 제13조제3항).
- 다. 임시위원장 선출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제2항).
- 라. 위원장의 회의 소집 규정을 삭제함(안 제14조제3항).

3. 참고사항

다. 기타 : 신 구조문 대비표

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성과보상사업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제1항 단서를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③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, 심의·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.

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(중전의 제3항) 중 “시장 또는 위원장”을 각각 “시장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를 소집할 수 있다. 다만, 사항이
경미하거나 시장 또는 위원장이
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
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④ ~ ⑨ (생략)

----- . -----
----- 시장-----

----- .

③ ~ ⑧ (현행 제4항부터 제9항
까지와 같음)